

가축분뇨배출시설 [] 설치신고서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설치신고 : 5일 변경신고 : 2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

신고내용	사업장 소재지		(전화번호:)							
	착공 예정일(착공일)			준공 예정일(준공일)						
	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									
	배출 시설	시설명	가축종류	사육마릿수	규모(m ²)	수량	배출량(m ³ /일)			
	처리 시설	시설명	처리방법	처리공법		용량(m ³ /일)	수량			
	초지 또는 농경지		소재지				면적(m ²)			
	사용 용수량(m ³ /일)				퇴비저장시설(m ³)					
	위탁 처리 내용	위탁처리 대상			운반 위탁업체			위탁 처리시설		
가축 종류		종류	위탁량 (m ³ /일)	업체명	사업자 등록번호	허가·신 고번호	업체명	사업자 등록번호	허가·신 고번호	소재지

변경내용	변경사유	변경전	변경후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·제2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첨부서류	1.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.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(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) 1부 3.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.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,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-----	---

유 의 사 항

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·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2.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
 - 가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
 - 나.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[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,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)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]
 - 다.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
 - 라.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
 - 1)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
 - 2)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)
 - 마.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(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)
 - 바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
3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